



보도 일시	2022. 7. 29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7. 28.(목) 10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장 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준상 (02-2100-2992)

2022년 하반기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

① '22년 하반기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,

- ①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**294.4만개**(전체 가맹점의 96.0%)
- ②결제대행업체(PG) 하위가맹점 **144.2만개**(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.2%)
- ③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**16.5만명**(전체 택시사업자의 99.9%)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(0.5~1.5%)가 적용됩니다.

② '22년 상반기('22.1.1일~ 6.30일)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**18.2만개**에 대해서는

-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*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, 그 규모는 **약 558억원**(가맹점당 약 30만원) 정도로 추산됩니다.

* '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(0.5~1.5%). 단 '22.1.1일~1.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'21년도 우대수수료율(0.8~1.6%) 적용

③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되어,

-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·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**16.3만개** 및 개인택시사업자 **3,690명**에 대해 '22.9월 중순(9/14)부터 환급 예정입니다.

1

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 선정 결과

- ① (신용카드가맹점) '22.7.31일부터 294.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(전체 306.6만개 중 96.0%)에 대해,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-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'22.7.28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 - 또한, 여신금융협회 콜센터(☎02-2011-0700)나 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」*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☞참고1)
- * (인터넷 접속시) www.cardsales.or.kr, (모바일 애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- ② (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)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.2만개(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.2%), 개인택시사업자 16.5만명(전체 택시사업자의 99.9%)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(0.5~1.5%)이 적용될 예정이며,
 -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신용·체크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】

구분	연간 매출액 (가맹점수)	적용 수수료율	
		신용카드	체크카드
영세	3억원 이하 (가맹점 229.9만개, PG 하위가맹점 113.9만개, 택시 16.5만명)	0.5%	0.25%
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(가맹점 24.7만개, PG 하위가맹점 11.6만개)	1.1%	0.85%
중소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(가맹점 23.6만개, PG 하위가맹점 11.1만개)	1.25%	1.0%
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(가맹점 16.3만개, PG 하위가맹점 7.5만개)	1.5%	1.25%

2

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

- (제도 개요) 2022년 상반기 중('22.1.1.~'22.6.30.)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*받다가,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·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,

*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

-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(기납부 수수료 - 우대수수료)을 환급('22.9.14일 예정) 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- (환급액) '22.1.1~6.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“기납부한 카드 수수료”와 “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”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.

◆ 환급액 = '22.1.1일~'22.7.30일 동안 카드매출액 × ('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- '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*(0.5~1.5%))

* 단, '22년도 우대수수료율 적용('22.1.31일) 이전인 '22.1.1일~1.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선 '21년도 우대수수료율(0.8~1.6%) 적용

※ (사례) '22.1.1일 개업,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.4억원(연매출 환산 2.4억원) 가맹점이 2.2%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,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* 가능

* 7개월간 카드매출 1.4억원 * {(기납부수수료율 2.2% - 우대수수료율 0.8%)*1/7+(기납부 수수료율 2.2% - 우대수수료율 0.5%)*6/7} = 232만원

-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,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·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*하실 수 있습니다.

* 2022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

- (환급 규모) '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.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, 약 558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
(※ 가맹점당 약 30만원 환급)

□ (환급 안내)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(☞참고2)

○ 참고로,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,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*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,

* (예) 2022년 1월 ~ 2022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2년 6월 30일 전 폐업

-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‘22.9.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】

구 분	전화번호	구 분	전화번호
여신금융협회	02)2011-0700	NH농협은행	1644-7400
롯데카드	1588-8100	비씨카드	1588-4500
삼성카드	1588-8700	신한카드	1544-7000
하나카드	1800-1111	현대카드	1577-6000
KB국민카드	1588-1788	씨티은행	1566-1000

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

□ (제도 개요)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,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‘22.1월~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·중소 가맹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

○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“기납부한 카드수수료”와 “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”와의 차액에 대해 ‘22.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.

□ (지급 대상)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(16.3만개) 및 개인택시사업자(3,690명)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, 환급금액은 '22.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.

□ (지급 안내)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*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.

*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,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준상 (02-2100-2992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 김준환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 김충진 (02-3145-7447)
<공동>	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	책임자	본부장 배종균 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 조윤서 (02-2011-074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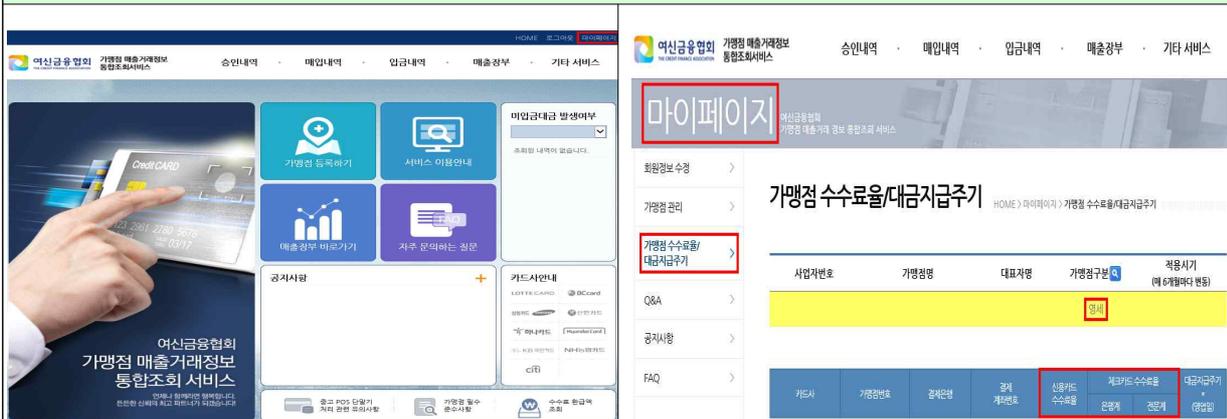


참고1

가맹점 수수료를 확인 관련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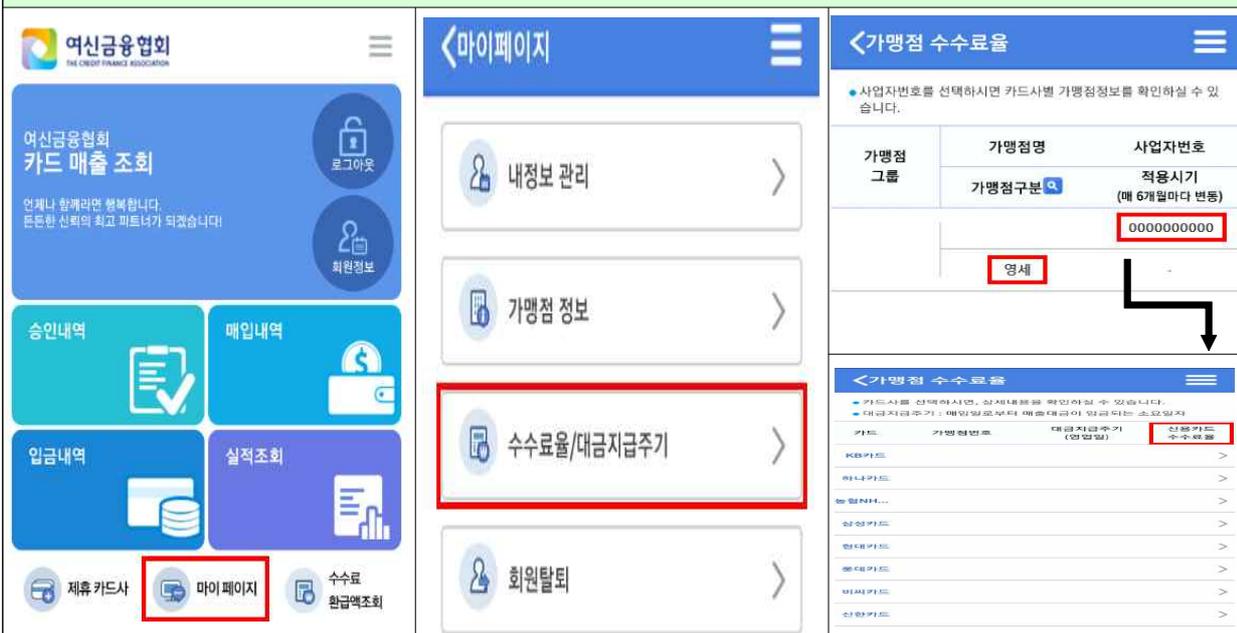
[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]

① 인터넷 홈페이지 (www.cardsales.or.kr)



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“마이페이지” 접속 → ② 마이페이지에서 “가맹점 수수료율”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

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(카드매출조회)



①마이페이지→②수수료율/대금지급주기→③가맹점수수료율→④사업자번호 클릭

참고2

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

【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】

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안내

【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】

구분	신용카드	체크카드
영세가맹점 (연 매출액 3억원 이하)	0.5%	0.25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3~5억원)	1.1%	0.85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5~10억원)	1.25%	1.0%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10~30억원)	1.5%	1.25%

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어 2022년 7월 31일(일)* 이내에 신용카드 0.5%, 체크카드 0.25%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대수수료율 적용

또한, 귀 가맹점은 2022년 상반기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규 가맹점으로, 카드는 금번에 한해,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*(신용:0.5%, 체크:0.25%)을 소급 적용하여 이전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**할 예정입니다.

* 2022년 1월 1일~1월 30일 매출액에 대해선 2021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(신용:0.8%, 체크:0.5%)을 소급 적용

** 단, 카드매출이 없었거나 현재 수수료율이 안내된 우대수수료율 보다 낮은 경우, 환급액이 없을 수 있음

※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('22.9.14.(수) 이후 확인 가능)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「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」(www.cardsales.or.kr)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】

① 인터넷 홈페이지

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

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"수수료 환급액 조회"
 * (인터넷 홈페이지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애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
【환급 관련 정보 안내】

구분	확인 가능한 정보
협회	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▶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
카드사	각 사 홈페이지 ▶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, 수수료율, 환급 금액